

수원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재나113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0. 7. 7 자 2019재나1133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9. 7. 25 자 2018재나249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나7063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7. 13 선고 2017가단101292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A
피고(재심피고)군포시
변론 종결 2020. 5. 19.
판결 선고 2020. 7. 7.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재나24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나7063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7. 13. 선고 2017가단101292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84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7. 1. 26.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0129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7.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7나7063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11.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7다29022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3. 29. 그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1. 5. 수원지방법원 2017나70632호 판결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2018재나249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19. 7. 25. 각하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9. 10. 17. 상고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그러자 원고가 2019. 11. 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를 부당하게 배척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종국판결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재심판결에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구체적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어떠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주장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주장한 것으로 선행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미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재심사유로 삼아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7. 2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당시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보면 이 사건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주된 상고이유로써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유사한 사유로 이미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판단까지 받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아 검토할 당시 이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그와 같은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태훈

판사안희경

판사김봉남

별지